

대학도서관기준의 동향분석과 개정안 연구

Trend Analysis and Revision of the University Library Standard in Korea

윤 희 윤(Hee-Yoon Yoon)*

〈 목 차 〉

I. 서 론	5. 대만의 대학도서관설립운영기준
II. 대학도서관기준의 국제적 동향과 특징	III. 국내 대학도서관기준의 분석과 개정안
1. 미국 ALA의 SLHE	1. 대학도서관기준의 변천과 한계
2. 캐나다 CACUL의 SCCL	2. 대학도서관기준의 개정안
3. 영국 LA의 GLRSFHE	V. 요약 및 결론
4. 일본의 대학도서관기준	

초 록

대학도서관의 궁극적인 사명은 대학의 교육, 연구, 사회봉사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다. 이러한 사명을 성취하려면 대학도서관의 운영지침, 평가도구로 활용될 수 있는 최적의 기준을 개발하고 적시에 개정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주요 국가(미국, 캐나다, 영국, 일본, 대만)의 대학도서관기준이 함축하는 동향과 특징을 개관·비교하고, 국내의 법적 및 권장기준에 내재된 문제점과 한계를 분석하여 장서, 직원, 시설 중심의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키워드: 대학도서관기준, 장서기준, 직원기준, 시설기준

ABSTRACT

The ultimate mission of the university library is to provide the various information services in support of the teaching, research, and public service missions of the university. The achievement of the mission requires the optimal development and timely revision of university library standard that can be used as an operating guidelines and assessment tools. On the basis of this justification, this study has compared the trend and feature of library standards in major countries(USA, Canada, UK, Japan, Taiwan), analysed the problems and limitations of legal and recommended standards in Korea, and suggested the revised plan of Korean university library standard focusing on collections, staffs, and facilities.

Keywords: University Library Standard, Collection Standard, Staffing Standard, Facilities Standard

* 대구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yhy@daegu.ac.kr)

• 접수일: 2011년 4월 26일 • 최초심사일: 2011년 6월 4일 • 최종심사일: 2011년 6월 28일

I. 서 론

기준의 사전적 의미는 '기본이 되는 표준'이다. 이를 대학도서관에 적용하면 대학의 교육기능과 연구활동에 필요한 고품질 지식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심체로서 구비해야 할 구성요소와 각종 정보서비스에 대한 기본적 지침(guideline)으로 규정할 수 있다.

이러한 함의의 대학도서관기준이 반드시 필요할 뿐만 아니라 중시해야 하는 배경과 근거는 도서관의 사명과 목적, 구성요소(인력, 장서, 예산, 시설 등), 이용자 서비스, 운영관리 등에 대한 기본 방향을 제공하고, 수행하는 각종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측정·평가할 수 있는 준거로 활용되며, 대개 전문직 단체, 인가기관 또는 정부수준에서 제정됨으로써 공신력을 담보하기 때문에 현주소를 파악하거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목표수준을 설정할 때 근거자료가 된다. 또한 범국가적 차원과 개별도서관의 입장에서 미래의 발전과 개선을 유도하는 지침서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사회사조 및 교육환경의 변화, 정보매체의 변용, 이용자요구의 다변화, 정보기술의 발전을 수용하여 개정·보완될 경우에는 시의적절한 업무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대학도서관과 관련된 법적 기준은 과거 「대학설치기준령」이 폐지된 이래로 대체법령이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학설립·운영규정」을 제외하면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도서관협회의 권장기준도 2003년 이래로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논리적 타당성, 현실적 적합성과 실용성의 측면에서 적지 않은 문제점과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2008년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과 2010년 한국도서관협회에 의해 수행된 기초연구가 반증한다.

이에 본 연구는 주요 국가(미국, 캐나다, 영국, 일본, 대만)의 대학도서관기준이 함축하는 동향과 특징을 개관·비교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국내의 법적 및 권장기준에 내재된 문제점과 한계를 분석하여 논리적 타당성과 현실적 적합성을 담보할 수 있는 개정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부언하면 대학도서관기준의 핵심내용인 자료, 직원, 시설을 중심으로 양적 기준의 타당성과 적합성을 논증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가칭 '대학도서관진흥법령'의 제정 및 '한국도서관기준'의 개정에 필요한 배경정보와 논리적 근거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II. 대학도서관기준의 국제적 동향과 특징

1. 미국 ALA의 SLHE

미국 대학도서관기준은 ALA 산하의 대학 및 연구도서관부회(Association of College and Research Libraries)가 단과대학(college), 커뮤니티 및 전문대학(community, junior college),

종합대학(university)을 대상으로 각각 제정·적용하여 왔다. 단과대학에 적용된 「Standards for College Libraries」는 1959년에 처음 제정된 이래로 4차례(1975년, 1986년, 1995년, 2000년)에 걸쳐 개정되었으며, 1995년판까지는 자료, 직원, 시설 등에 대한 양적 기준이 존재하였으나 2000년판부터 삭제하는 대신에 성과평가를 포함시켰다. 커뮤니티 대학 및 전문대학에 적용된 「Standards for Community, Junior, and Technical College Learning Resource Programs」는 1960년에 처음 제정된 이래로 3차례(1979년, 1990년, 1994년) 개정되었으며, 역시 1994년판까지는 자료, 직원, 시설, 정보접근 장비의 내구연한(수명) 등에 대한 양적 기준이 존재하였다. 그리고 종합대학에 적용된 「Standards for University Libraries」는 1979년에 최초로 공표되었고 1989년에 개정되었다.

1998년에는 ACRL 위원회가 대학도서관을 위한 성과평가 테스크 포스를 구성하여 검토한 후 장래의 모든 기준에 성과평가를 포함시키도록 권고하였고 2000년판 단과대학도서관기준에 성과평가가 포함되었다. 그 이후에 3개 대학도서관별 기준위원회는 회의를 거쳐 단일의 대학도서관기준을 제정하도록 합의하였고, 다시 ACRL은 2002년에 단일의 대학도서관기준을 준비하기 위한 테스크 포스를 구성하여 초안을 작성한 다음에 메일링 리스트, C&RL News, ACRL 웹페이지를 통하여 여론을 수렴하고 위원들 상호간의 전자 메일, 전문가 코멘트, ALA Toronto 회의(2003년 6월) 및 San Diego 회의(2004년 1월), 공청회를 거쳐 수정·보완한 다음에 ACRL 이사회에 최종 승인 과정을 거쳐 2004년 6월에 「Standards for Libraries in Higher Education」을 공포하였다.

이 통합형 대학도서관기준이 종래의 3가지 기준과 다른 점은 첫째, 실무교육형 대학에서 연구대학에 이르기까지 모든 고등교육기관의 도서관에 공통으로 적용하고 둘째, 고등교육기관의 목적에 따라 각각 도서관이 목적을 수립할 때 지원하는 도구로 설계되었으며 셋째, 대체로 기관의 유효성과 학생의 학습성과에 대한 도서관의 기여를 기술하고 넷째, 대학도서관의 운영 및 서비스 요소를 평정하기 위한 안내사항과 양적 및 질적 평가척도를 제시한 것이다. 현행 기준에서 성과평가, 자료, 직원, 시설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간추리면 〈표 1〉과 같다.¹⁾

〈표 1〉 미국 대학도서관기준의 주요 내용(2004년)

목 차	주요 내용
서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기준은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학술적인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도서관에 적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과거의 도서관기준은 재정지원, 공간, 자료, 직원활동과 같은 투입요소에 치중하였으나, 새로운 기준에는 투입요소도 고려하고 산출요소와 성과를 반영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입 : 통상 도서관 프로그램의 원재료로서 자금, 공간, 장서, 설비, 직원 등이다. • 산출 : 수행된 업무의 정량화된 결과로서, 예컨대 대출책수, 참고질의응답수 등을 말한다. • 성과 : 도서관의 자원과 프로그램을 접촉한 결과로 나타나는 이용자의 변화이다. • 이 기준은 도서관과 직원의 유효성 평정을 위한 양적 및 질적 방법을 제공한다.

1)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Association of College and Research Libraries, *Standards for Libraries in Higher Education*, 2004, <http://library.rpcc.edu/sacs/ACRL%20Standards%20for%20Libraries%20in%20Higher%20Education.pdf> [cited 2010. 6. 12].

4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42권 제2호)

목 차	주요 내용
비교 포인트	<p>투입 척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의 총학생과 교원(FTE)을 합산한 수*와 대비한 장서수의 비율 • 대학의 총학생과 교원(FTE)을 합산한 수와 대비한 연간 수입책수의 비율 • 대학의 총학생과 교원(FTE)을 합산한 수와 대비한 자료·정보자원 경비의 비율 • 자료비, 인건비, 기타 운영비(네트워크, 장비 등)에 지출한 도서관 충예산의 비율(%) • 대학의 총학생과 교원(FTE)을 합산한 수와 대비한 도서관 직원의 비율 • 대학의 총학생과 교원(FTE)을 합산한 수에 대한 이용가능한 도서관공간의 비율(sq.ft) • 특정 목표집단의 총학생수 대비 도서관 이용교육에 참여한 학생수의 비율 • 대학의 총학생과 교원(FTE)을 합산한 수와 대비한 도서관 좌석수 및 워크스테이션의 비율
	<p>산출 척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의 총학생과 교원(FTE)을 합산한 수에 대한 대출책수의 비율(예약 제외) • 대학의 총학생과 교원(FTE)을 합산한 수에 대한 상호대차(ILL) 건수의 비율(복사와 현물은 구분함) • ILL을 통한 대출수 대비 대차수의 비율 • ILL/DDS를 통한 대출/대차의 소요시간, 충족율, 단위당 비용 • 대학의 총학생과 교원(FTE)을 합산한 수와 대비한 참고질의건수의 비율
계획, 평가, 성과 평가	<p>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서관은 활동프레임워크로서의 사명진술과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도서관의 사명과 목적은 대학의 사명 및 목적에 부합해야 한다. • 도서관의 품질이나 유효성 평가는 대학의 고유한 사명과 목적과에 밀착되어야 한다. 도서관이 대학의 컨텍스트 내에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전개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계획과정에 포함되어야 한다. • 전략적 계획과 같은 공식적 계획과정과 방법이 자주 사용되는데, 그 입안과정에는 대학커뮤니티의 광범위한 스펙트럼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이 수렴되어야 한다. 전략적 계획은 평가, 개선, 개선을 반복하는 과정이며, 그것은 커뮤니티를 본질적 가치에 초점을 맞추게 하고 전체적인 방향성을 제공한다. <p>평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모든 이용자집단 뿐만 아니라, 비이용자에 대한 표본도 필요하다. 도서관 관리자와 직원은 자문위원회의 협조를 얻어 조사대상을 선정하고 질문지를 작성해야 한다. • 질문내용은 도서관이 대학의 사명을 얼마나 잘 지원하는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대학의 목적과 목표를 달성하는지와 관련되어야 한다. 정식 평가도구에는 도서관의 일반적인 지식에 대한 조사, 학생·다른 사서·지도교수의 피드백을 수집하기 위한 사서 및 개별지도를 위한 평가용 체크리스트, 학생의 도서관이용을 추적하는데 사용되는 학생·교직원·졸업생을 대상으로 하는 포커스그룹 면담, 다른 기관의 도서관 직원 혹은 적절한 컨설턴트에 의한 평가, 도서관·정보서비스의 특정 영역이나 업무에 대한 재검토 등이 포함될 수 있다. <p>성과 평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평가는 현행 도서관실무를 개선하는데 실용적인 메커니즘이 될 수 있다. • 평가도구에는 설문조사, 테스트, 인터뷰, 기타 유효한 측정기법이 있다. • 평가에는 도구, 표본의 크기와 추출방법의 선택도 중요하다. 도구는 타당한 것이어야 하며, 사용법도 평정대상인 과제에 적절해야 한다.
자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서관은 사명과 이용자요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하고 신뢰성 있는 최신 정보자원을 제공해야 한다. • 자원은 사이트 내에서 또는 원격 보존공간으로부터, 메인 캠퍼스内外에서 인쇄형, 하드카피, 온라인 텍스트나 회상, 기타 다양한 매체로 제공되어야 한다. • 도서관은 한정된 예산에도 불구하고 가능한 한 효율적인 방법으로 고품질 자원을 준비해야 한다. • 도서관은 적절한 폐기처분을 통하여 장서의 최신성과 활력을 유지해야 한다.
직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서관 직원의 수와 수준은 주요 이용자의 프로그램 및 서비스 요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충분해야 한다. • 도서관 직원은 ALA가 인증하는 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소지해야 하며, 추가로 적절한 훈련, 경험, 학위를 소지한 다른 전문직원도 필요하다. • 모든 전문직원은 전문적인 활동을 책임지는 동시에 관여해야 한다. 보조직원과 학생보조원은 자격, 훈련, 경험과 능력에 따라 적절한 책임이 할당되어야 한다. • 전문직원과 보조직원에게는 안전, 긴급사태, 자료의 수복·수선을 포함한 계속교육이 장려되어야 한다. • 도서관 직원에게는 지위, 권리, 책임이 명시된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 이 규정은 ACRL의 「Standards for Faculty Status for College and University Librarians」와 일치해야 한다.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서관 시설과 분관은 잘 계획되어야 한다. • 도서관은 이용자가 서비스, 인력, 자원과 장서에 적합한 환경에서 학습하고 연구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적절한 공간을 준비해야 한다. • 도서관의 설비는 적절하고 기능적이어야 한다.

* 총학생수는 학부생과 대학원생을 합산한 것이며, 교수수는 정규직(FTE)으로 환산한 것임.

2. 캐나다 CACUL의 SCCL

캐나다는 2004년에 캐나다도서관협회 산하 대학도서관협회(The Canadian Association of College and University Libraries)의 CTCL(Canadian Technical and College Libraries)이 제정한 「Standards for Canadian College Libraries」가 대표적인 기준이다.²⁾ 이것은 1992년의 「Standards for Canadian College Learning Resource Centres」를 개정한 것으로서 총 7개의 하위기준(사명, 경영, 직원, 서비스, 자료, 예산, 시설)과 부록(도서관 기본서비스의 체크리스트, 참고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미국과 달리 캐나다의 대학도서관기준은 직원과 자료에 한하여 양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를 간추리면 <표 2>와 같다. 그 외에도 도서관예산의 최저기준을 대학 총예산의 6%로, 학생 1인당(FTE) 최저 기준을 500달러로 설정하고 있다.

<표 2> 캐나다 대학도서관(단일 캠퍼스)의 직원배치 및 장서기준*

학생수 (FTE, 명)	직원					자료				
	관리직 사서	사서	도서관 기술원	기타 보조직원	계	최신 자료**	최신 인쇄잡지	전자잡지 (전문)	기타 포맷***	라이선 스형 DB
1,000 이하	1	2	2	2	7	30,000	230	3,000	2,640	10
1,000~2,999	1	3	3	3	10	40,000	300	5,000	5,500	20
3,000~4,999	2	4	5	4	15	60,000	500	8,000	8,750	24
5,000~6,999	2	6	7	6	21	80,000	700	10,000	11,250	30
7,000~8,999	3	6	9	7	25	95,000	850	12,000	13,600	36
9,000~10,999	3	8	11	9	31	110,000	900	14,000	16,600	40
11,000~12,999	4	12	13	11	40	125,000	1,000	18,000	19,400	44
13,000~14,999	5	13	16	13	47	140,000	1,200	20,000	22,000	48
15,000~16,999	6	14	19	16	55	155,000	1,800	25,000	24,400	52
17,000~18,999	6	16	21	18	61	170,000	1,800	30,000	26,600	56

* 여러 사이트에 캠퍼스가 있거나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추가 제공할 경우, 더 많은 직원과 장서가 필요함

** 인쇄도서와 전자도서를 포함함

*** 비디오, DVD, 오디오, 정부문서, 마이크로폼, 지도 등을 포함함

3. 영국 LA의 GLRSFHE

영국은 국가의 법적 기준 또는 영국도서관정보전문가협회(The Chartered Institute of Library and Information Professionals)의 권장기준을 불문하고 대학도서관을 위한 별도의 기준은 제정하

2) Canadian Library Association, Standards for Canadian College Libraries, CTCL Standards Committee, *Standards for Canadian College Libraries*(Ottawa : CLA, 2004), pp.6-10.

지 않고 있다. 그 대신에 CILIP의 전신인 LA 산하의 Colleges of Further and Higher Education Group이 2000년에 수립한 「Guidelines for Learning Resource Services in Further and Higher Education : Performance and Resourcing」이 유일하다.³⁾ 이 지침은 4개 영역(서론, 성과, 자원, 결론)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학도서관과 관련된 기준으로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은 제3장인 자원(Part 3 : Resourcing)인데, 주요 내용을 발췌하면 〈표 3〉과 같다.

〈표 3〉 영국 CILIP의 학습자원센터(대학도서관)지침의 주요 내용

구 분	주요 내용
3.1 학습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면적은 대학 총면적의 10%, 교육공간의 20% 이상이어야 한다. 가구와 서가, 통신장비, 자료탐지시스템, 자동화, 시청각기술, 복제설비 등을 구비해야 한다.
3.2 직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서관 및 정보서비스를 책임지는 직원은 협회의 공인회원(CM) 또는 후보자이어야 한다. 직원은 계속해서 그들의 기술과 지식(학습자 지원 및 학습시설을 포함한 학습과 교수, 전략적 및 운영적 관리, ICT/ILT, 팀워크와 파트너십, 사서직 및 학습자원관리분야의 전문직 및 기술적 스킬, 자문과 상담, 정책이슈의 주지봉사)을 개발해야 한다.
3.4 접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원서비스는 모든 구성원에게 개방적이어야 한다. 이용집단의 다양성, 즉 나이, 능력, 학습 및 연구의 방식을 불문하고 모든 이용자에게 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 접근성을 극대화하려면 개간시간, 서비스 담당직원의 우수성, 학습자료 범위, 장애인 접근성, 가구와 장비의 친화성, 사인 및 가이드의 명료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3.5 장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서는 대학전체의 폭넓은 정보요구 뿐만 아니라 교수·학습 요구를 반영해야 한다. 장서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학생수, 대학의 규모, 캠퍼스 사이트의 수, 고급학위과정의 비율, 파트타임 학생의 비율, 서비스의 현재적 및 잠재적 이용자수, 개설된 주제분야, 축적용량 등이다. 장서개발정책은 대학의 정보요구와 정보전략에 기초해야 한다.

4. 일본의 대학도서관기준

일본의 대학도서관과 관련된 기준은 문부과학성이 제정한 「대학설치기준」과 대학기준협회가 제정한 「대학도서관기준」으로 대별할 수 있다.

먼저 「대학설치기준」은 1956년에 「문부성령」(제28호)으로 처음 제정되었으며, 2010년에 문부과학성령(제15호)으로 개정된 것이 가장 최신의 법령이다. 이 법령에 포함된 대학도서관과 관련된 조항을 발췌하면 〈표 4〉와 같다.⁴⁾

3) Kathy Ennis ed., *Guidelines for Learning Resource Services in Further and Higher Education : Performance and Resourcing*, 6th ed.(London : Library Association Publishing, 2000), pp.21-41.

4) 文部科學省, “大學設置基準,” <http://law.e-gov.go.jp/htmldata/S31/S31F03501000028.html> [cited 2011. 3. 5].

〈표 4〉 일본 「대학설치기준」의 도서관 관련내용

조항	주요 내용
제38조	1. 대학은 학부의 종류, 규모 등에 따라 도서, 학술잡지, 시청각자료, 기타 교육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도서관을 중심으로 계통적으로 갖춘다.
	2. 도서관은 전향의 자료의 수집, 정리 및 제공하는 것 외에 정보의 처리 및 제공시스템을 정비하여 학술정보를 제공하는데 노력하는 동시에 전향의 자료제공에 관하여 다른 대학도서관 등과 협력하도록 노력한다.
	3. 도서관에는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는데 필요한 전문적 직원, 그 외의 전임직원을 둔다.
	4. 도서관에는 대학의 교육연구를 촉진할 수 있는 적당한 규모의 열람실, 참고실, 정리실, 서고 등을 갖춘다.
	5. 전향의 열람실에는 학생의 학습 및 교원의 교육연구를 위하여 충분한 수의 좌석을 갖춘다.

다음으로 '대학도서관기준'은 1952년 6월 17일자로 대학기준협회가 제정하였으며 1982년 5월 18일자로 개정한 이래로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 권장기준의 주요 내용을 발췌하면 〈표 5〉와 같다.⁵⁾

〈표 5〉 일본 대학도서관기준의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2 도서관 기능과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서관은 대학의 연구·교육에 불가결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수집·조직·보관하여 연구·교육·학습 등 의 이용요구에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주요 기능으로 한다. 도서관은 현재 및 미래의 연구계획을 촉진하는데 충분한 규모와 내용, 학습·교육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장서구축방침 하에서 자료가 수집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자료선택-수집체계를 확립하여 이용자의 적극적 협력을 얻는 동시에 요구사항을 수용해야 한다. 자료의 다면적 및 신속한 검색을 위하여 전국적 또는 국제적 서지사업 성과를 활용하여 정리업무의 능률화·표준화를 도모하는 동시에, 신속·정확하게 처리해야 한다. 자료가 효과적으로 이용되기 위해서는 열람·대출업무 외에도 참고조사, 기타 서비스 업무를 통하여 개인 및 집단이용자의 요구에 신속·정확하게 대응해야 한다. 도서관은 변화하는 이용자요구를 근거로 장서를 적절히 유지·관리하고 이용기회를 극대화해야 한다.
3 직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서관은 사명수행과 기능발휘에 필요하고 충분한 직원을 적정 배치해야 한다. 도서관에 부과된 고도의 전문적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특히 전문직원을 배치할 필요가 있다. 전문직원은 원칙적으로 대학원 도서관·정보학 등을 전공한 사람으로 충당해야 한다. 전문직원, 기타 도서관의 전문적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에게는 폭넓은 연수 또는 재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과 더불어 자격, 능력, 경험 등에 걸맞게 대우해야 한다.
4 시설·설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서관은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되지 않으면 안 된다. 도서관은 학내의 적절한 위치에 건립되지 않으면 안 된다. 도서관의 성격과 규모에 따라 이용, 수장, 업무, 기타의 공간이 유기적으로 배치되지 않으면 안 된다. 시설과 설비는 모든 이용자가 편리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을 정비·유지하는 동시에 연구·교육활동의 진보발전에 따라 제공해야 할 서비스의 확대를 위하여 수시로 개선되어야 한다. 대학도서관의 규모는 연구·교육·학습에 충분해야 하며, 시대추세에 따라 유연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공간의 호환성과 확장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5) 大學基準協會, “大學図書館基準,” (昭和五七年五月一八日)

〈http://www.lb.nagasaki-u.ac.jp/about/pdf/arikata_ref_2.pdf〉 [cited 2011. 2. 10].

구 분	주요 내용
5 조직 및 관리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서관은 원칙적으로 하나의 대학에 하나의 조직으로 구성한다. • 도서관에 두는 분관·부국관 등은 대학 및 도서관의 내용, 규모, 학내 배치 및 전통 등에 근거하고, 중앙관·분관·부국관의 역할과 상호관계를 명확하게 하는 동시에 이용자요구에 부응하고 효율적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자료를 집중관리하고, 중앙관은 충분한 조정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관장은 도서관 관리운영의 최고 책임자이다. 대학의 연구·교육을 위하여 도서관이 수행해야 할 역할을 충분히 인식하고, 이용자 요구에 대답할 수 있도록 정비·충실히하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관장은 대학도서관이 수행해야 할 역할과 직책에 깊은 인식과 이해가 있어야 하는 한편 관리능력이 있는 교원으로 보임한다. 다만 대학의 연구와 교육에 충분한 이해를 가지고 있고, 높은 신경과 뛰어난 관리능력을 가진 전문직원을 관장에 보임할 수 있다. 관장이 수행하는 책무의 중요성으로 볼 때 학내에서의 지위는 학부장 등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 •분관·부국도서관을 두는 경우, 필요에 따라 분관장, 부국도서관장(또는 주임 등)을 두지만, 중앙도서관장은 학내 모든 도서관의 통합 또는 연락조정의 책임을 진다. •관장을 보좌하는 직위로 부관장(또는 차장)을 둘 수 있다. •도서관은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업무조직을 마련하고 각 부문에 필요한 관리직위를 둔다. •도서관에는 학장 또는 관장의 자문에 응하고, 도서관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도서관위원회 또는 이에 준하는 위원회를 둔다.

5. 대만의 대학도서관설립운영기준

대만의 「大學圖書館設立及營運基準」은 2004년 7월 28일자로 교육부가 제정·공포하였고 2008년 2월 19일자로 최종 개정되었는데, 총 8개항(총칙, 설립, 조직과 인원, 경비, 도서정보자원, 건축과 설비, 복무, 경영관리) 36개조로 구성되어 있다.⁶⁾ 이 법적 기준의 일부를 발췌한 <표 6>을 보면 제1조에서 '도서관법 제5조(도서관 설립 및 운영기준은 중앙주관기관이 정한다)의 규정에 의거하여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명백한 법적 기준이다. 그럼에도 영미와 마찬가지로 건물의 면적, 인력, 예산, 장서 등에 대한 양적 기준을 명시하지 않고 있다. 다만 인력의 경우, 제10조에서 전체 직원의 3% 이상을 전문직으로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표 6> 대만 「大學圖書館設立及營運基準」의 분석

壹. 總則

一. 本基準依據圖書館法(以下簡稱本法)第五條規定訂定之。

:

參. 組織與人員

十. 大學圖書館應有三分之二以上之專業人員。

이상에서 분석한 대학도서관기준 개정의 국제적 동향과 특징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초기의 대학도서관기준과 달리 현재는 캐나다를 제외한 대다수 국가의 대학도서관기준에

6) 教育部, “大學圖書館設立及營運基準,” (中華民國93年) <http://db.lawbank.com.tw/FLAW/FLAWDAT01.asp?lsid=FL031322> [cited 2011. 1. 12].

서 자료, 직원, 시설 등에 대한 양적 기준이 배제되고 있다. 그 배경은 초기에 투입요소 중심의 각종 양적 기준이 대학도서관의 인프라 확충과 충실화를 견인하는 제도적 장치로 작용하였으나, 현재는 대다수가 양적 기준을 충족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종래의 대학도서관기준은 자국의 전국적 수준을 높이는데 기여할 의도가 있었으나, 그 명분이 크게 약화된 현재는 범국가적 구성요소의 충실화보다 개별도서관의 산출요소, 성과평가 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셋째, 국가에 따라 대학도서관기준을 제정 및 개정하는 주체도 상이하다. 미국, 영국, 캐나다는 도서관협회가 주도하는 반면에 대만은 교육부가, 일본은 문부과학성과 대학기준협회가 맡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학도서관기준의 지위나 영향력도 미국을 비롯한 대다수 국가의 경우는 권장기준인 반면에 대만의 교육부 및 일본의 문부과학성이 제정한 기준은 법적 기준이다. 다만 영미 등은 권장기준으로 운용하더라도 법적 기준에 준하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III. 국내 대학도서관기준의 분석과 개정안

1. 대학도서관기준의 변천과 한계

가. 대학도서관기준의 변천과정

국내 대학도서관기준은 법적 기준과 권장기준으로 나누어진다. 전자는 「대학설치기준령」, 「도서관법시행령」, 「대학설립·운영규정」을 말하며, 후자는 한국도서관협회의 「한국도서관기준」 중의 「대학도서관기준」을 의미한다.

먼저 법적 기준은 1955년 8월 4일자로 제정된 「대학설치기준령」에서 도서관의 설치근거 및 장서기준을 규정한 것이 최초이다. 그 이후에 10차례 개정되었는데, 제정법령(대통령령 제1063호)과 마지막 개정법령(1991년 대통령령 제13282호)을 발췌하면 〈표 7〉과 같다. 그러나 1996년 7월 26자로 타법에 규정한다는 것을 전제로 「대학설치기준령」은 폐지되었다.

〈표 7〉 과거 「대학설치기준령」의 도서관 관련조항 비교

제정법령		마지막 개정법령		
제11조	대학에는 학생1인에 대하여 30권이상의 도서를 비치하여 1학과당 5천권이상이 되어야 한다. 단, 초급대학과 2년제 사범대학에 있어서는 각기 3분지 2로 한다. 교사	제8조	③ 지원시설은 도서관·학생회관·대학본부·체육관·강당·전자계산소 및 그 부대시설로서, 별표 2에 의하여 산출한 순사용면적과 공유면적을 합산한 면적을 지원시설의 기준면적으로 한다. 지원시설의 시설별 기준면적의 산출기준	
			시설	순사용면적(N)
			도서관	0.73T+80
				0.65N

제정법령	마지막 개정법령	
에는 교실, 사무실, 교원실, 연구실, 도서관(실) 이외에 강당, 회의실, 영화설비등과 의무실, 식당등 학생의 보건 후생을 위한 설비를 하여야 한다.	제12조	<p>① 대학은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도서관을 두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열람실 · 정기간행물실 · 참고도서열람실 · 서고 및 사무실 등 필요한 시설 열람실에는 총학생정원의 20퍼센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좌석 총학생정원 1인당 30권 또는 학과당 5천권 중 많은 수 이상의 도서와 매년 총학생정원 1인당 3권 이상을 추가한 도서 학과별로 10종 이상(자연계는 15종이상)의 전문분야 정기간행물

그리고 「도서관법」의 경우, 1965년에 「도서관법시행령」을 제정하여 대학도서관의 사서직원 배치기준 및 자격기준 등을 법제화하였으나 자료와 시설 등의 기준은 「대학설치기준령」에 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1990년까지의 「도서관법시행령」에서는 “대학도서관의 시설 및 자료기준은 대학설치기준령 및 전문대학설치기준령의 규정에 의하되, 학술정보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시청각기재 · 전산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는 조항을 두어 기준령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1991년 4월 8일자로 「도서관법시행령」을 폐지하는 대신에 대체법령으로 제정된 「도서관진흥법시행령」 부칙 제2조에서 “도서관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다만, 별표 2 중 대학도서관과 학교도서관에 관한 사항은 다른 대통령령에서 이에 관하여 정할 때까지 그 효력을 갖는다”고 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대학도서관의 자료, 직원, 시설 등에 관한 기준을 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법적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다. 다만 「도서관법」과는 별개로 1996년 8월 10일에 「대학설립 · 운영규정」(교육부령 제685호)이 제정되어 제4조 제1항의 ‘별표 2’에서 도서관을 <표 8>처럼 교육기본시설로 규정하고 ‘열람실 · 정기간행물실 · 참고도서열람실 · 서고 및 사무실’을 두되, 열람실에는 ‘학생정원의 20퍼센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좌석’을 배치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시설에 한정된 법적 근거가 있다.

〈표 8〉 「대학설립 · 운영규정」의 교사시설 구분

교사시설	구 분
교육기본 시설	<p>강의실 · 실험실습실 · 교수연구실 · 행정실 · 도서관 · 학생회관 · 대학본부 및 그 부대시설로 하며, 도서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두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열람실 · 정기간행물실 · 참고도서열람실 · 서고 및 사무실 열람실에는 학생정원의 20퍼센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좌석

다음으로 법령의 제개정 및 폐지와는 별개로, 도서관계는 기존의 법적 기준이 너무 낮게 책정되어 도서관의 목적과 기능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 상향 조정을 유인하는 지침 서로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각종 도서관이 경영지표로 삼을 수 있는 권장기준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에 한국도서관협회는 1981년 8월에 관종별로 세분한 「한국도서관기준」을 제정함으로써

구속력이 없을지라도 도서관계의 발전과 개선, 서비스 체계의 확립, 경영평가를 위한 가치지표의 설정에 크게 기여하였다. 다만 도서관기준이 현실적 적합성과 실용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약 5년 주기로 개정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사정으로 개정되지 못하다가 2000년 4월말에 '도서관기준작성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2003년에 새로운 「한국도서관기준」이 발표되었다. 1981년판은 직원 및 자료기준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나, 2003년판에는 시설기준이 추가되었을 뿐만 아니라 직원 및 자료기준도 전면 개정되었다. 양대 기준의 자료, 직원, 시설을 비교하면 〈표 9~11〉과 같다.

〈표 9〉 한국도서관기준의 자료기준 비교

1981년 기준			2003년 기준		
구분	자료기준	비고	구분	구성기준	비고
단행본	1. 기본도서 50,000책 2. 전문도서 학과당 6,000책	1. 총도서 : 기본도서+전문도서 2. 기본도서는 학습도서, 교양도서, 참고도서, 지정도서 등	단행본*	• 기본도서 : 학생 1인당 50권 이상** • 연간증가책수 : 학생 1인당 2종 이상	• 학습서, 교양서, 참고서, 지정도서, 학술서 등을 포함한다.
정기 간행물	인문계열 학과당 20종 이상 사회계열 학과당 30종 이상 자연계열 학과당 30종 이상 가정, 예체능계열 학과당 15종 이상 의학계열 학과당 700종 이상 치의학계열 학과당 50종 이상	1. 기타 일반 각과 공통 정기간행물의 확보는 우선되어야 한다. 2. 국내 학술지 및 교양지는 전부 구입한다.	학술지	• 인문·예체능계 : 학과당 30종 이상 • 사회과학계 : 학과당 50종 이상 • 자연과학계 : 학과당 100종 이상 • 의학계 : 500종 이상 • 치의학계 : 100종 이상	• 계열별 기준에는 전문 (full-text) 수록형 전자잡지를 포함하지 않는다. 단, 국내 학술지를 모두 구입한다.
연간 증가 책수	1인당 2책 이상	-	데이터 베이스	• 계열별 또는 학문영역별 대표적인 서지데이터베이스 : 각 1종 이상	• 색인지, 초록지, CD-ROM 또는 온라인 DB를 말한다.

* 대학도서관의 경우 석·박사과정이 개설된 학과에 대해서는 단행본 구성기준의 40% 이상에, 대학원중심 대학 및 대학원대학을 지향하는 대학은 단행본 구성기준의 60% 이상에 해당하는 전문학술서를 추가로 확보하여야 한다.

** 대학도서관의 학생 1인당 기준은 학부와 대학원의 학생 편제정원을 기준으로 한다. 단, 야간 학부학생은 그 정원의 40%를 이에 추가하여 계상하며, 특수대학원의 재학생은 제외한다.

〈표 10〉 한국도서관기준의 직원기준 비교

1981년 기준					2003년 기준			
구분	직종	인원	내용	비고	직종	인원	산출기준	비고
기본 인원	주제전문가	명	단과대학별 1명		사서직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 1,000인 • 장서: 50,000권 	학생수는 학부와 대학원의 학 생 편제정원의 합을 기준으로 한다.
	사서	10명	봉사대상자 1,000명, 장서수 50,000책, 연간증가책 5,000책	정, 준사서				
	사무직	5명	사서 2명당 1명	사무, 타자, 전산직 등	비사무직	4		사무직원(또는 일원행정직원), 기 능직원(사무보조·건물 및 시설 관리인력 등)을 포함한다.
	기타직	명	필요에 따른 적정수(관리, 청소, 냉난방 등)	관리, 기능, 보조, 용원 등				

12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42권 제2호)

1981년 기준					2003년 기준			
구분	직종	인원	내용	비고	직종	인원	산출기준	비고
증원 인원	사서	1명	기본수 초과 봉사대상자 1,000명당(1명)	-	사서직	1	학생:1,000인을 초과하는 1,000인당	학생수는 학부와 대학원의 학 생 편제정원의 합을 기준으로 한다.
		1명	장서수 20,000책당	장서관리요원		1	장서:50,000권을 초과하는 15,000종당	
		1명	연간증가책수 2,500책당	"				
		명	특별봉사 및 활동에 따른 증원	-	비사서직	1	사서직 증원수의 70%	사무직원(또는 일반행정직원), 기능직원(사무보조·건물 및 시 설관리인력 등), 정보기술 전문 가를 포함한다.
	사무직	명	"	-				
	기타직	명	전문사서 증원수의 반수 (2:1)	-				

〈표 11〉 한국도서관기준의 시설기준 비교

구분	1981년 기준	2003년 기준												
열람석수	봉사대상자(학생+교직원)의 25% 이상	학부학생(편제정원 기준)의 25% 이상, 대학원학생의 30% 이상												
면적	-	$N(m^2) = 0.60T + 0.0107V + 9.88S + 0.05(0.60T + 0.0107V + 9.88S)$, $NS(m^2) = 0.25N$ (N : 순사용면적, T : 학생 편제정원, V : 총장서수, S : 전체직원수, NS : 공유면적)												
공간 배분	-	<table border="1"> <thead> <tr> <th>공간요소</th> <th>배분비율(%)</th> <th>비고(열람실, %)</th> </tr> </thead> <tbody> <tr> <td>자료공간</td> <td>30~35</td> <td rowspan="4">일반열람실 20~22 자료열람실 20~23</td> </tr> <tr> <td>이용자공간</td> <td>40~50</td> </tr> <tr> <td>직원공간</td> <td>5</td> </tr> <tr> <td>공유공간</td> <td>20</td> </tr> </tbody> </table>	공간요소	배분비율(%)	비고(열람실, %)	자료공간	30~35	일반열람실 20~22 자료열람실 20~23	이용자공간	40~50	직원공간	5	공유공간	20
공간요소	배분비율(%)	비고(열람실, %)												
자료공간	30~35	일반열람실 20~22 자료열람실 20~23												
이용자공간	40~50													
직원공간	5													
공유공간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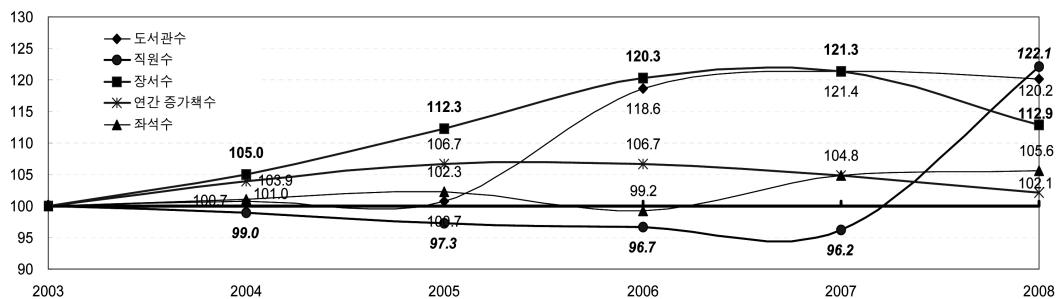
나. 대학도서관기준의 현실적 한계

2003년 이후 현재까지 대학도서관의 경영환경이 많이 변하였고 각종 양적 지표도 〈표 12〉⁷⁾ 및 〈그림 1〉에서 알 수 있듯이 상당히 증가하였다. 즉 2003년을 기준으로 최근 5년간의 변화를 지수화한 결과, 도서관수 120.2, 장서수 112.9, 연간 증가책수 102.1, 직원수 122.1, 좌석수 105.6으로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7) 한국도서관협회, 2009 한국도서관연감(서울 : 동협회, 2009), pp.442-443.

〈표 12〉 대학도서관 양적 데이터의 증감추이(2003~2008)

구 분	도서관수(개)	직원수(명)	장서수(책)	연간 증가책수	좌석수
2003	435	3,831	90,099,891	5,164,784	413,279
2004	438	3,791	94,464,376	5,365,791	417,329
2005	438	3,728	101,198,639	5,509,085	422,925
2006	516	3,704	108,379,487	5,512,329	409,933
2007	528	3,686	109,297,580	5,414,725	433,148
2008	523	4,676	101,692,511	5,273,213	436,424



〈그림 1〉 대학도서관 양적 데이터 증감추이의 지수화(2003=100)

한편,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에 탑재된 대학도서관 통계데이터 중에서 교육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기술대학, 각종 학교를 제외한 일반대학 소속의 289개관을 대상으로 2008년말 현재 1개관당 봉사대상자수, 장서, 연간 증가책수에 근거하여 직원, 자료, 시설의 현황과 이들을 지표화한 결과는 〈표 13〉과 같다.⁸⁾

〈표 13〉 대학도서관의 각종 양적 데이터 분석(2008년말 기준)

구 분	소 계	계	지표화 결과
봉사 대상자수 (명)	학부생	1,425,318	- ① 대학예산 대비 도서관예산(인건비 제외) : 1.06%
	대학원생	249,103	
	교수/직원	68,548/59,919	
예산 (천원)	대학(총예산)	18,094,674,146	② 대학예산 대비 자료구입비 : 1.07% ③ 봉사대상자 1인당 자료구입비 : 107원
	도서관	자료구입비	
		운영비	
직원 (명)	정규직	1,740(379)	④ 사서직원 1인당 봉사대상자수 : 1,036명 ⑤ 정규직원 점유비율 : 74.1%
	비정규직	500(239)	

8) 문화체육관광부,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http://www.libsta.go.kr/potal/bbsMng.do?task=getstat&url_sctn=potal&brd_sctn=N2〉 [인용 2010. 10. 19].

14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42권 제2호)

구 분			소 계	계	지표화 결과
장서 (책)	인쇄도서			98,728,486	⑥ 봉사대상자 1인당 단행본 책수 : 56.2책
	전자도서	국내		741,751	2,640,475
		국외		1,898,724	
	연속 간행물 (종)	인쇄형		18,3673	⑦ 학과(전공)당 연속간행물(인쇄형) 구독 종수 : 14.9종
		국내		78,659	
		국외		262,332	⑧ 학과(전공)당 연속간행물(전자형) 구독 종수 : 101.9종 ⑨ 학과(전공)당 연속간행물(인쇄형+전자 형) 구독종수 : 116.7종
		전자 형	국내	폐키지(종)	
			국외	폐키지(종)	
		전자 형	국내	폐키지(종)	폐키지 : 3,969
		전자 형	국외	폐키지(종)	종 : 1,799,296
		웹DB	국내	폐키지(종)	폐키지 : 4,883
		웹DB	국외	폐키지(종)	종 : 7,542,715
증가 제적 책수	증가	구입		2,968,989	⑩ 봉사대상자 1인당 웹DB 구독비율 : 4.2%
		기증		1,294,740	
	제적	제적		196,637	
시설	연면적(m ²)			2,455,435	⑫ 봉사대상자 1인당 면적 : 1.36m ²
	좌석수(개)	전용		231,335	⑬ 열람좌석당 봉사대상자수(학부생+대학원 생+교수+직원) : 5.4명
		자료실		104,050	

① 대학 총예산 대비 도서관 총예산의 비율(인건비 제외) : 도서관 총예산÷대학 총예산×100 : ② 대학 총예산 대비 도서관 자료구입비의 비율 : 도서관 자료구입비÷대학 총예산×100 : ③ 봉사대상자 1인당 자료구입비 : 자료구입비÷봉사대상자수(학부생+대학원생+교수+직원) : ④ 사서직원 1인당 봉사대상자수 : 봉사대상자÷사서직원수(사서자격증을 소지한 정규직원) : ⑤ 정규직원의 점유비율 : 정규직원수(사서직+기타직)÷전체직원수×100 : ⑥ 봉사대상자 1인당 단행본 책수 : 단행본 책수(e-book, 제본도서 포함)÷봉사대상자 수 : ⑦ 학과(전공)당 연속간행물(인쇄형) 구독종수 : 구독 연속간행물(전자잡지 포함) 종수: 학과(전공) 수 : ⑧ 학과(전공)당 연속간행물(전자형) 구독종수 : 전자잡지(라이선스 계약형 전문) 종수: 학과(전공) 수 : ⑨ 학과(전공)당 연속간행물(인쇄형+전자형) 구독종수 : 연속간행물(인쇄잡지+전자잡지) 종수: 학과(전공) 수 : ⑩ 봉사대상자 1인당 웹DB 구독비율 : 전체 웹DB 구독종수÷봉사대상자수×100 : ⑪ 봉사대상자 1인당 연간 증가책수 : 연간 증가책수÷봉사대상자수 : ⑫ 봉사대상자 1인당 면적 : 연면적(분관 포함)÷봉사대상자수 : ⑬ 열람좌석당 봉사대상자수 : 열람좌석수(전용+자료실)÷봉사대상자수

그런가 하면 2008년에 대통령 소속의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가 주관하고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이 실시한 「전국 도서관 운영평가」를 위한 대학도서관 기준 및 척도의 구성안에서 제시된 양적 평가항목을 간추리면 〈표 14〉와 같다.⁹⁾

〈표 14〉 2008년도 대학도서관 운영평가의 기준과 척도(안)

영역	항목	평가지표	평가척도
인적 자원	2.1 직원 비율	사서직원 1인당 봉사대상자수(명)	① 900 이상, ② 700~900 미만, ③ 500~700 미만, ④ 300~500 미만, ⑤ 300 미만
		전체직원 중 정규직원의 비율(%)	① 50 미만, ② 50~60 미만, ③ 60~70 미만, ④ 70~80 미만, ⑤ 80 이상
정보 자원	3.1 단행본	봉사대상자 1인당 단행본 책수(책)	① 15 미만, ② 15~20 미만, ③ 20~25 미만, ④ 25~30 미만, ⑤ 30 이상
		최근 3년간 봉사대상자 1인당 평균 단행본 증가책수(책)	① 1.5 미만, ② 1.5~2.0 미만, ③ 2.0~2.5 미만, ④ 2.5~3.0 미만, ⑤ 3.0 이상

9)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 2008 전국 도서관 운영평가 결과보고서(서울 : 동위원회 및 기획단, 2008), pp.127-135.

영역	항목	평가지표	평가척도
정보 자원	3.2 연속 간행물	학과(전공)당 연간 연속간행물 구독 종수(종)	① 20 미만, ② 20~30 미만, ③ 30~40 미만, ④ 40~50 미만, ⑤ 50 이상
		봉사대상자 1인당 연간 Web DB 구독비율(%)	① 0.5 미만, ② 0.5~1.0 미만, ③ 1.0~2.0 미만, ④ 2.0~3.0 미만, ⑤ 3.0 이상
		봉사대상자 1인당 연간 연속간행물 구독비용(천원)	① 10 미만, ② 10~30 미만, ③ 30~50 미만, ④ 50~70 미만, ⑤ 70 이상
	3.3 비도서 및 기타자료	봉사대상자 1인당 연간 비도서 및 기타자료 구입비율(%)	① 1.0 미만, ② 1.0~2.0 미만, ③ 2.0~3.0 미만, ④ 3.0~4.0 미만, ⑤ 4.0 이상
		봉사대상자 1인당 연간 비도서 및 기타자료 구입비용(천원)	① 0.5 미만, ② 0.5~1.0 미만, ③ 1.0~2.0 미만, ④ 2.0~3.0 미만, ⑤ 3.0 이상
	3.4 전문 DB	최근 3년간 봉사대상자 1인당 평균 전문DB 구축건수(건)	① 0.1 미만, ② 0.1~0.2 미만, ③ 0.2~0.3 미만, ④ 0.3~0.4 미만, ⑤ 0.4 이상
예산 및 시설	4.1 예산	대학 전체예산 대비 도서관예산 비율 (%)	① 1.3 미만, ② 1.3~1.6 미만, ③ 1.6~2.0 미만, ④ 2.0~2.3 미만, ⑤ 2.3 이상
		대학 전체예산 대비 자료구입비 비율 (%)	① 1.0 미만, ② 1.0~1.3 미만, ③ 1.3~1.6 미만, ④ 1.6~2.0 미만, ⑤ 2.0 이상
		봉사대상자 1인당 연간 자료구입비 (천원)	① 40 미만, ② 40~90 미만, ③ 90~140 미만, ④ 140~200 미만, ⑤ 200 이상
	4.2 시설	봉사대상자 1인당 도서관면적(m ²)	① 1.0 미만, ② 1.0~1.3 미만, ③ 1.3~1.6 미만, ④ 1.6~2.0 미만, ⑤ 2.0 이상
		열람좌석수당 봉사대상자수(명)	① 20 이상, ② 15~20 미만, ③ 10~15 미만, ④ 6~10 미만, ⑤ 6 미만

이상에서 살펴본 한국도서관협회의 대학도서관기준, 2008년말 기준의 대학도서관 각종 평균, 그리고 전국 도서관 운영평가의 척도를 대비하여 상대적 차이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총 289개 대학도서관의 평균 봉사대상자수 약 7,000명을 이용하여 한국도서관협회의 양대 기준을 적용한 자료, 직원, 시설의 산출결과는 〈표 15〉와 같다.

〈표 15〉 대학도서관의 평균 봉사대상자수에 근거하여 양대 기준을 적용한 결과

조 건	산출 대상	한국도서관협회 양대 기준의 적용	
		1981년	2003년
• 봉사대상자 : 7,000명(학부생 5,000명+대학원 1,000명+교수 500명+직원 300명+기타 200명) • 장서 : 학생 1인당 기본장서 50권, 연간증가책수 2종	자 료 (단행본)	• 기본도서 : 300,000권 이상 • 전문도서 : 학과당 6,000권 • 연간증가책수 : 12,000권 (6,000명×2권) 이상	• 기본장서 : 300,000권 이상 • 연간증가책수 : 12,000종 (6,000명×2종) 이상
		직 원	57명*
	시 설	• 열람석 : 1,750석 이상 • 면적 : 기준 부재	38명** • 열람석 : 1,550석 이상 • 면적 : 19,313m ² ***

* 기본인원 15명(사서직원 10명+사무직원 5명)+사서직 증원 28명([(6,000명÷1,000명)+(250,000권+20,000권)]+기타직 증원 14명(사서직 증원의 1/2)=57명

** 기본인원 10명(사서직원 6명+비사서직원 4명)+사서직 증원 19명([(6,000명÷1,000명)+(208,333종(총수와 권수의 비율은 1 : 1.2를 적용)+15,000종)]+비사서 증원 9명(사서직 증원의 70%)=38명

*** 0.60×6,000명(편제정원 학생)+0.0107×300,000권(총장서수)+9.88×800명(전체직원수)+0.05(0.60×6,000명+0.0107×300,000권+9.88×800명)=15,450m² + 3,863m²(15,450 m²×0.25)=19,313m²

16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42권 제2호)

둘째, 2008년말을 기준으로 대학도서관의 평균 봉사대상자수 대비 확보한 자료, 직원, 시설의 평균을 한국도서관협회의 양대 기준 및 「대학설립·운영규정」의 열람석 확보율과 연계하여 산출하면 〈표 16〉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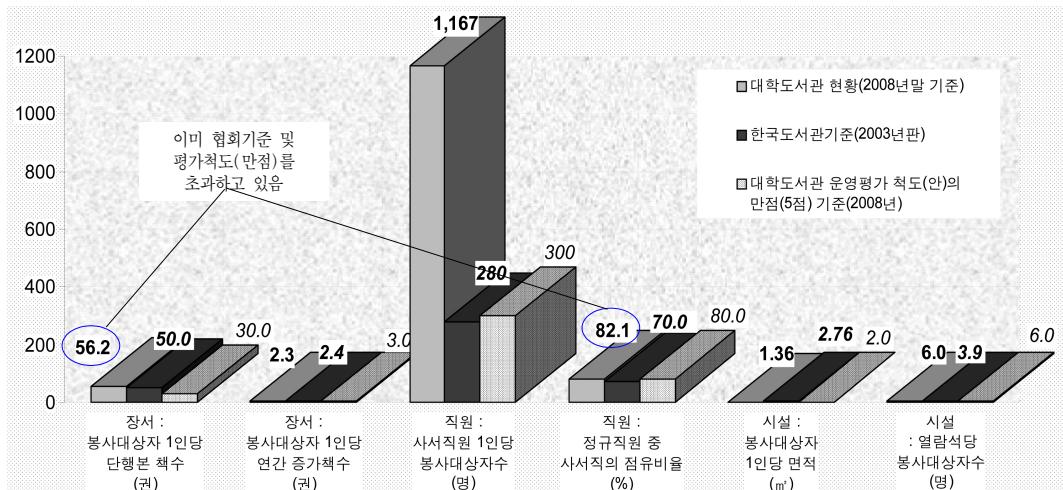
〈표 16〉 대학도서관 현황과 양대 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결과

구 분	도서관현황 (2008년 기준)	한국도서관기준		대학설립·운영 규정
		1981년	2003년	
자료	봉사대상자 1인당 단행본 책수	56.2권	50권	-
	봉사대상자 1인당 연간증가책수	2.3권	2권 2종(2.4권)	-
직원	사서직원 1인당 봉사대상자수	1,167명	184명 280명	-
	정규직원 중 사서직의 점유비율	82.1%	50% 70%	-
시설	봉사대상자 1인당 면적	1.36m ²	- 2.76m ²	-
	열람석 확보율	19.4% (1,161석)	봉사대상자 (학생+교직원)의 25% 이상 (1,500석 이상) 편제정원의 학부생 25% 및 대학원생 30% 이상 (1,550석 이상)	편제정원 (학생정원) 20% 이상 (1,200석)

셋째, 2008년말을 기준으로 대학도서관의 평균 봉사대상자수 대비 확보한 자료, 직원, 시설의 평균을 한국도서관협회의 양대 기준 및 대학도서관 운영평가 척도(안)와 연계하여 재산출·비교하면 〈표 17〉 및 〈그림 2〉와 같이 자료 중에는 봉사대상자 1인당 단행본수가, 정규직원 중에는 사서직원의 점유비율이 2003년 한국도서관기준이나 대학도서관 운영평가의 만점 척도(⑤)를 상회하고 있다.

〈표 17〉 대학도서관과 관련된 양적 지표(자료, 직원, 시설)의 산출결과 비교

구 분	도서관현황 (2008년)	한국도서관기준		2008년 대학도서관 운영평가 척도(안)		
		1981년	2003년	③	④	⑤
자료	봉사대상자 1인당 단행본 책수	56.2권	50권	20~25 미만	25~30 미만	30 이상
	봉사대상자 1인당 연간 증가책수	2.3권	2권 2종(2.4권)	2.0~2.5 미만	2.5~3.0 미만	3.0 이상
직원	사서직원 1인당 봉사대상자수	1,167명	184명 280명	500~700 미만	300~500 미만	300 미만
	정규직원 중 사서직의 점유비율	82.1%	50% 70%	60~70 미만	70~80 미만	80 이상
시설	봉사대상자 1인당 면적	1.36m ²	- 2.76m ²	1.3~1.6 미만	1.6~2.0 미만	2.0 이상
	열람석당 봉사대상자수	6.0	4.7 3.9	10~15 미만	6~10 미만	6 미만



〈그림 2〉 대학도서관 양적 지표(자료, 직원, 시설)의 산출결과 비교

2. 대학도서관기준의 개정안

가. 자료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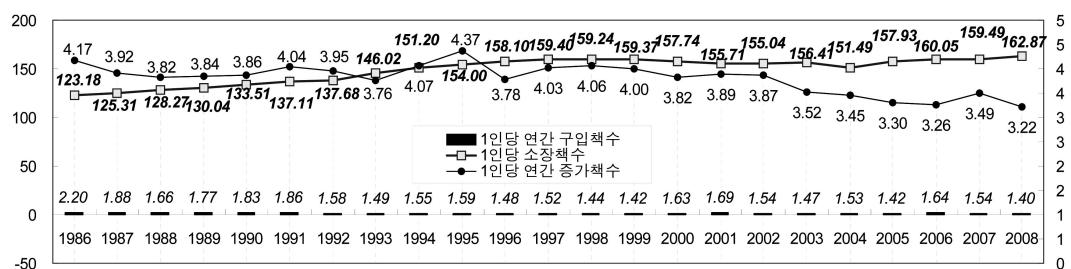
현행 권장기준은 기본도서인 단행본의 경우, 학생 1인당 50권 이상, 연간 증가책수는 학생 1인당 2종 이상, 학술지는 학문영역별로 구분하여 학과당 30종(인문·예체능계)~500종(의학계)까지 책정하고 있다. 이들의 현실적 적합성을 논증하고 개정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 1인당 기본도서 50권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미 2008년 말을 기준으로 대학도서관의 학생 1인당 소장책수는 평균 59.2권(1개관당 평균 장서수 701,281÷평균 학생수 11,851명)이기 때문에 권장기준으로서의 의미를 상실하고 있다. 그렇다면 개정안에서는 학생 1인당 소장책수를 상향 조정할 것인지 아니면 현행 기준을 유지하면서 제적·폐기를 유도하여 장서의 질적 충실회를 유도할 것인지를 선택해야 하는데 당분간은 후자보다 전자에 무게중심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이유는 장서가 대학 내에서 도서관의 학술적 정체성과 비교우위의 핵심역량을 규정하는 요체에 해당하며, 매년 출판시장에서 유통되는 국내외 단행본을 수집·보존할 때 당대와 후대를 위한 접근 및 이용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세계 대학도서관계를 선도하는 북미 연구도서관협회(Association of Research Libraries)에 소속된 도서관의 지난 13년(1986~2008) 학생 1인당 평균 장서가 〈그림 3〉과 같이 국내보다 2배 이상 많은 가운데 2008년 말을 기준으로 162.87권이고 일본도 100.4권(장서수 302,399,776권÷학생수 3,010,474명)에 달하기 때문이다.¹⁰⁾ 양국의 대

10) Martha Kyrillidou, Les Bland, Comps. and Edits., *ARL Statistics 2007 - 2008* (Washington, D.C. : Association of Research Libraries, 2009), p.16. ; 文部科學省 研究振興局情報課, “平成21年度 學術情報基盤實態調査”

학도서관계가 인터넷 및 디지털 정보유통이 보편화된 상황에서도 인쇄자료를 꾸준히 수집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1인당 기본도서는 현재의 50권을 70권 수준으로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연간 증가책수의 현행 기준은 학생 1인당 2종(권수로는 2.4권)이다. 이러한 기준은 미국 ARL 대학도서관의 지난 13년간 학생 1인당 구입책수를 도시한 <그림 3>에서 알 수 있듯이 최저 1.4권에서 최고 2.2권이고, 일본도 2.2권인 점을 감안하면 무리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표 18>에서 백분위 분포상 75%가 평균 3.3권(연간 증가책수 39,177÷학생 11,850명)인 점을 고려하면 학생 1인당 3종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림 3> 미국 ARL 회원도서관의 학생 1인당 소장책수, 연간 증가책수 및 구입책수의 변화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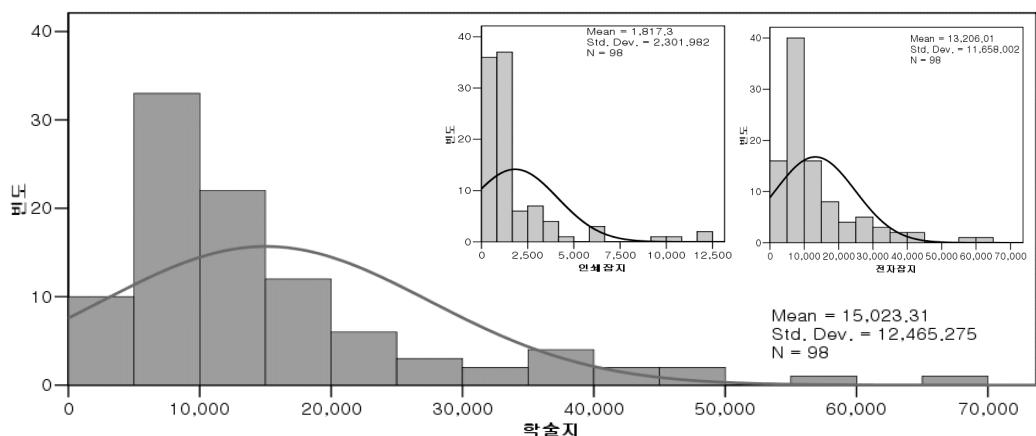
<표 18> 국내 대학도서관 자료의 평균 및 백분위 분포

구 분	평 균	백분위 분포		
		25%	50%	75%
장서(권)	701,280.91	369,817.50	580,361.50	920,014.75
연간 증가책수(권)	30,022.27	13,206.25	24,776.50	39,177.00
학술지 (종)	인쇄형	1,839.34	528.50	1,069.00
	전자형	12,552.41	5,341.75	17,266.25

셋째, 학술지의 현행 기준은 인쇄형 구독잡지에 한하여 학문영역별로 30종~500종으로 설정하였다. 반면에 전자잡지는 비고란에서 '계열별 기준에는 전문(full-text) 수록형 전자잡지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단서조항만 존재할 뿐 구체적인 기준을 명시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2003년 개정 판을 준비할 당시에는 전자잡지가 보편화되지 않아 기준에 포함시키는 것이 무리로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패키지 및 웹DB에 포함된 전자잡지를 라이선스 계약방식으로 제공하며 교수와 학생도 매우 선호하는 추세이므로 현행기준은 전면적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우선 많은 인쇄잡지가 전자버전으로도 유통되는 상황이므로 인쇄형 학술지의 구독종수를 학문영역(계열)별로 구분하

<http://www.e-stat.go.jp/SG1/estat>List.do?lid=000001065462> [cited 2011. 2. 10].

여 학과(전공)당 확보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또한 전자잡지는 라이선스 계약방식의 패키지 형태이므로 그 속에 포함된 개별잡지를 학과(전공)별로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렵고 그렇게 할 필요도 없다. 따라서 학술지 구독기준은 계열별 아래의 학과(전공)에서 봉사대상자(학부생+대학원생+교수) 1인당으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하여 2008년말을 기준으로 4년제 대학 도서관 중에서 분관 및 주제관과 전자잡지의 통계데이터가 부실한 경우를 제외한 총 98개관의 인쇄형 및 전자형 학술지 종수와 이들을 합산한 구독(라이선스)종수의 분포는 <그림 4>와 같다. 1개 관당 평균은 15,023종(인쇄형 1,817종+전자형 13,206종)이고 이를 평균 봉사대상자인 12,908명(학생 10,525명+대학원생 1,887명+교수 496명)으로 나누면 1인당 1.16종이 된다. 그러나 1개관당 평균 구독종수의 백분위 분포상 75%(18,451종)에 해당하는 1인당 평균 종수는 1.43종(18,451종÷12,908명)이므로 봉사대상자 1인당 권장기준을 1.5종으로 설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림 4> 대학도서관 연속간행물(인쇄형 및 전자형 학술지) 구독종수의 평균과 분포

나. 직원기준

직원 배치기준의 경우, 정원을 산출하는데 동원된 양대 변수(학생수, 장서)가 타당한지, 각각의 수치적 데이터가 적합한지를 검증하여 개정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수와 장서가 기본인력 및 증원인력을 산출하기 위한 결정변수로서의 타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의 2008년말 통계에서 분관 및 데이터가 부실한 사례를 제외한 총 124개관을 대상으로 상관분석한 결과, <표 19>와 같이 나타났다. 즉, 모든 변수를 투입한 결과, 정규직원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변수들의 Pearson 상관계수 순위는 장서(0.917), 자료구입비(0.814), 연간 증가책수(0.767), 학생수(0.761), 교수(0.760), 연속간행물 종수(0.425)의 순으로 높아 장서와 학생수를 정원산출의 주요 변수로 채택하는데 무리가 없다.

〈표 19〉 대학도서관 정원산출과 관련된 모든 변수의 상관분석 결과

구 분	정규 직원	장 서			봉사대상자			연면적	자료 구입비
		장서	연속간행물 종수	연간 증가책수	학생수	교수수	직원수		
정규직원	1	.917**	.425**	.767**	.761**	.760**	.074	.091	.814**
장서		1	.497**	.835**	.833**	.771**	-.031	.075	.817**
연속간행물 종수			1	.351**	.462**	.396**	.012	.033	.445**
연간 증가책수				1	.819**	.752**	.000	.122	.801**
학부생					1	.725**	-.053	.082	.770**
대학원생						1	.270	.059	.797**
교수							1	-.033	.179**
연면적								1	.075
자료구입비									1

둘째, 기본인력 10명(사서직원 6명+비사서직원 4명)의 산출기준인 ‘학생 1,000인 및 장서 50,000권 이하’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대학도서관이 운영되려면 3대 핵심업무(장서개발, 자료조직, 정보서비스 및 보존관리)에 최소한 1명씩 배치되고 그들 중에서 1명의 근무공백(휴가, 병가, 조퇴, 출장, 회의참석 등)을 해소하기 위한 대체성 여유인력 1명을 확보해야 한다. 따라서 사서직 기본인력 4명에 기타 행정사무 및 시설관리 등을 위한 비사서직 기본인력 3명(사서직원의 70% 내외)을 추가하여 총 7명(사서직원 4명+비사서직원 3명)을 대학도서관의 기본 인력으로 책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측면에서 2003년의 기본인력 기준은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표 20〉 대학도서관 정규인력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회귀분석 결과

회귀모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B 표준오차 오류	t 베타	유의 확률	공선성 통계량		수정된 R ²	Durbin- Watson
	공차	VIF				공차	VIF		
1	(상수)	-1.857	.840	-	-2.211	.029	-	-	.804
	장서	2.424E-5	.000	.917	25.393	.000	1.000	1.000	
2	(상수)	-1.846	.810	-	-2.280	.024	-	-	.851
	장서	2.006E-5	.000	.759	12.567	.000	.332	3.009	
	자료구입비	2.034E-6	.000	.193	3.204	.002	.332	3.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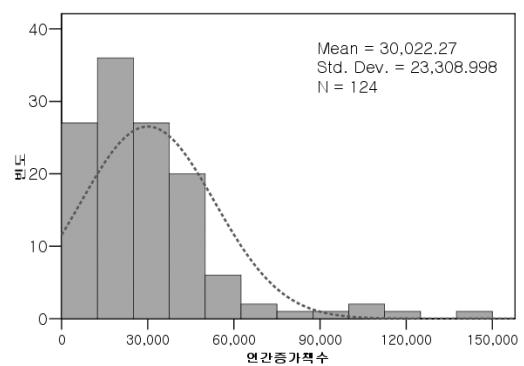
셋째, 증원인력의 경우, ‘학생 1,000인을 초과하는 1,000인당 및 장서 50,000권을 초과하는 15,000 종당’ 사서직원 각각 1명과 ‘사서직 증원수의 70%’를 비사서직 증원으로 책정한 기준에서 양대 변수(학생수, 장서)가 타당한지를 판단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정규인력과 유의한 상관성이 있는 모든 변수(장서, 연속간행물 종수, 연간 증가책수, 학생수, 교수수, 자료구입비)를 단계별 투입방식으

로 회귀분석한 결과, 〈표 20〉과 같이 장서와 자료구입비가 정규인력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로 밝혀졌다. 그러나 회귀모형의 전체 설명력(85.1%)에서 장서가 차지하는 비중은 80.4%인 반면에 자료구입비는 4.7%에 불과하였다. 다만 회귀모형에 포함되지 않은 연속간행물 종수와 연간 증가책수는 장서의 일부이고, 자료구입비는 장서 및 연간 증가책수와 직접적 상관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장서를 증원인력 산출의 대용지표로 간주해도 무방하지만, 직원의 업무수행과 정보서비스 부담을 가중시키는 봉사대상자는 학생수가 교수수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학생수를 증원인력의 주요 변수로 간주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장서와 학생수를 증원인력 산출의 결정변수로 삼은 것은 타당하다.

마지막으로 증원인력을 산출하기 위한 수치적 데이터, 즉 '학생 1,000인을 초과하는 1,000인당 및 장서 50,000권을 초과하는 15,000종당 사서직원 1인'과 '사서직 증원수의 70%를 비사서직원 증원'으로 책정한 기준이 합리적인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미루어 짐작하건대 학생수 1,000명과 장서 15,000종을 초과할 때마다 1명씩 증원하도록 설정한 근거는 양자를 사서직원 1인당 업무수행 및 봉사부담의 한계로 간주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최근 대다수 대학에서 학생의 편제정원이 급증하지 않는 현실을 감안하면 학생수가 1,000명 증가할 때마다 사서직원 1명을 증원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과민할 필요가 없다. 반면에 연간 증가책수는 중요한 변수로 간주하되 증원인력 산출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종수를 권수로 변경하는 한편, 기술통계를 분석한 〈표 21〉 및 〈그림 5〉에서 알 수 있듯이 124개관의 연평균 증가책수는 약 30,022권이고, 전체의 백분위 분포에서 50%~75%에 위치하므로 30,000권이 증가할 때마다 사서직원 1명을 증원하도록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표 21〉 대학도서관 연간 증가책수의 기술통계 분석 결과

구 분	증가책수
연간 증가책수	최소값
	최대값
	평균
연간 증가책수의 백분위 분포	25%
	50%
	75%



〈그림 5〉 대학도서관 연간 증가책수의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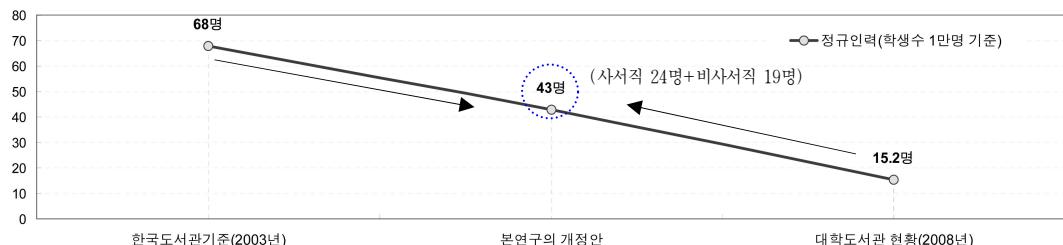
이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학생규모를 사례로 삼아 2003년판 한국도서관기준 및 개정안에 근거하여 정규직원수를 산출·비교할 필요가 있는데, 그 결과는 〈표 22〉와 같다. 그리고 2008년 말

현재 대학도서관(124개관)의 평균 봉사대상자인 학생수 11,850명(장서 701,281권)에 따른 정규직 원수와 2003년판 한국도서관기준 및 개정안에 의거하여 사례학생수 10,000명 기준으로 산출한 정 규직원수를 비교하면 <그림 6>과 같이 개정안은 한국도서관기준보다 25명이 적은 반면에 현재 대 학도서관이 확보한 인원의 평균보다 29명이 많다.

〈표 22〉 대학도서관 정원산출의 현행 기준과 개정안

구 분	2003년 한국도서관기준			본 연구의 개정안				
	학생수 (1인당 50권 기준)	장서수 (1인당 50권 기준)	사서직원	비사서직원	계	사서직원	비사서직원	계
1,000명	5만권	6	4	10	4	3	7	
5,000명	25만권	21	14	35	14	10	24	
10,000명	50만권	40	28	68	24	19	43	
15,000명	75만권	48	33	81	41	28	69	
20,000명	100만권	80	56	136	54	38	92	
25,000명	125만권	96	67	163	68	47	115	

* 기본인력 10명의 기준 : 학생수 1,000명, 장서 50,000권



〈그림 6〉 대학도서관의 정규인력 현황과 현행기준 및 개정안 격차 비교

다. 시설기준

시설의 경우, 현행 기준인 순사용면적은 ' $N(m^2) = 0.60T$ (학부생 및 대학원생 편제정원) + 0.0107V(총장서수) + 9.88S(전체직원수) + 0.05(0.60T + 0.0107V + 9.88S)'을, 공유면적은 ' $NS(m^2) = 0.25N$ '을 적용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2008년말을 기준으로 124개관의 통계데이터를 이용하여 회귀분석한 결과, 학생 편제정원, 총장서수, 전체직원수는 연면적의 회귀방정식에서 유의한 변수로 채택되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3개 독립변수를 투입하여 회귀분석한 결과, 설명력(수정 R^2)이 0.01에 불과하여 회귀분석 자체가 무의미하였다. 이에 124개관 중에서 장서수 50만권 및 학부생 5천명

이하인 도서관을 제외한 총 70개관의 데이터를 다시 회귀분석한 결과, 〈표 23〉에 요약한 것처럼 학생수(학부생+대학원생)와 장서가 연면적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로 나타났으며, 이들의 수정 R^2 는 약 78%(학생수 70%, 장서 8%)로 상당히 높았다.

〈표 23〉 대학도서관 연면적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회귀분석 결과

회귀모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 확률	공선성 통계량		수정된 R^2	Durbin-Watson
	B	표준오차 오류	베타			공차	VIF		
1	(상수)	-1,034.431	1,628.618	-	.635	.527	-	-	.694
	학생수	1.154	.092	.836	12.539	.000	1.000	1.000	
2	(상수)	-2,240.322	1,413.397	-	-1.585	.118	-	-	.776
	학생수	.720	.116	.522	6.209	.000	.461	2.171	
	장서	.008	.002	.427	5.089	.000	.461	2.171	

따라서 현행 시설기준인 연면적은 학생수와 장서를 독립변수로 하는 〈공식 1〉로 대체하고, 공유면적(NS)은 3대 공간(자료공간+이용자공간+직원공간)의 25% 또는 연면적의 20%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연면적의 공간요소별 배분비율은 현재기준처럼 자료공간 30~35%, 이용자공간 40~50%, 직원공간 5%, 공유공간 20%를 적용하면 무리가 없다.

$$\text{연면적 (TS)} = -2,240 + 0.72S + 0.008C$$

$$\text{공유면적 (NS)} = 0.2TS$$

TS : Total Space, NS : Non-assignable Space, S : 학부생 및 대학원생의 편제정원, C : 장서

〈공식 1〉 대학도서관의 연면적 및 공유면적 산출기준 개정안

IV. 요약 및 결론

국내 대학도서관을 위한 법적 기준은 「대학설립·운영규정」을 제외하면 전무하고, 2003년에 개정된 한국도서관협회 권장기준도 적지 않은 문제점과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에 법적 및 권장기준의 논리적 타당성과 현실적 적합성을 분석하여 개정안을 제시하였는 바,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자료기준의 경우, 기본도서는 현행기준인 학생 1인당 50권을 70권 수준으로 높이고, 연간 증가책수는 학생 1인당 2종을 3종으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학술지는 인쇄형 구독잡지에 한하여 학문영역별로 30종~500종으로 설정한 현행기준을 봉사대상자(학부생+대학원생+교수) 1인당

으로 바꾸어 1.5종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음으로 직원기준의 경우, 기본인력은 현행기준인 10명(사서직원 6명+비사서직원 4명)을 7명(사서직원 4명+비사서직원 3명)으로 하향 조정하고, 증원인력은 ‘학생 1,000인을 초과하는 1,000인당 및 장서 50,000권을 초과하는 15,000종당 각각 사서직원 1명’을 증원하도록 책정한 현행기준을 ‘학생 1,000명을 초과하는 1,000명당 및 장서 50,000권을 초과하는 30,000권당 각각 사서직원 1명’을 증원하도록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비사서직원의 증원기준은 현재처럼 사서직원수의 70%로 책정하면 무리가 없다.

마지막으로 시설기준의 경우, 연면적은 학생수와 장서를 독립변수로 삼아 산출하는 공식, 즉 ‘ $TS = -2,240 + 0.72S + 0.008C$ ’로 대체하고 공유면적은 ‘ $NS = 0.2TS$ ’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연면적의 공간요소별 배분비율은 현행 기준처럼 자료공간 30~35%, 이용자공간 40~50%, 직원공간 5%, 공유공간 20%를 적용하면 무난하다.

최근 대학도서관계는 가칭 ‘대학도서관진흥법령’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도서관협회도 2003년판 한국도서관기준을 조만간 개정할 예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개정안은 법령 제정과 권장기준 개정을 위한 단초를 제공하는 동시에 논리적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은 각주로 대신함〉